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변경시행일 : 2020.10.05
3. 주요 정정사항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의 다음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다만, 토요일은 제외한다]로 한다. <단서 생략>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부터 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다만, 토요일은 제외한다]로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p>

[[간이]투자설명서]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매입 방법	기준가격 적용일 변경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</u> 에 공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</u> 에

		<p>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-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	<p>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-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※ 2020년 10월 5일 시행</p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 2020.10.05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	기준가격 적용일 변경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	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- 외화표시상장주식/상장채무증권 :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<u>최종시가</u>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</p> <p>- 외국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<u>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u></p> <p>- 장내파생상품 :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<u>가격</u></p>	<p>- 외화표시상장주식/상장채무증권 :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<u>전날의 최종시가</u>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</p> <p>- 외국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<u>외국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</u></p> <p>- 장내파생상품 :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<u>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</p>

<끝>.